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2
----------	------

제출년월일 : 2004. 6.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이중부과에 따른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의무조항은 시군간 전산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함 (안 제10조 삭제).
- 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액(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30만원미만)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일반우편 송달제도를 도입함 (안 제12의2제3항 신설).
- 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함 (안 제15조의2, 제28조의4, 제48조의2, 제60조의2).
- 라. 종전 재산세 비과세적용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시세감면조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17조, 제63조).
- 마.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함 (안 제28조의3제1항).
- 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안 제34조제1항, 제48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7013호)
 -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8149호, 제18299호)
 - 지방세법시행규칙중 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213호)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4. 5. 15 ~ 6. 4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시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5조의2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신고납부 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하며, 동조 단서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7조의 제목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을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개기하는 사항을” 을 “안산시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15” 를 “1,000분의 175”로 한다.

제28조의4의 제목 “신고납부” 를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신고 납부하고자” 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로 하며,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를 “교통세의 납부기한 내에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영 제146조의15 규정에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안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 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34조제1항중 “영 제167조” 를 “영 제157조”로 한다.

제48조중 “제조담배” 를 “담배”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2(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 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법 제2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제48조의3(가산세)** ①법 제233조의7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②법 제233조의7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0조의2(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63조의 제목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을 “감면조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이 봉 재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김 향 용
	담당자 성명·전화	김 복 수 (행정 2181)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 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p><u>〈신 설〉</u></p>	<p>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안산시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p>
<p>1. ~ 6.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28조의3(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p>	<p>제28조의3(세율) ①----- 1,000분의 175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8조의4(신고 및 납부 등) ①-----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 교통세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영 제146조의15 규정에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안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p>	<p>2.----- ----- ----- 관세 법 제248조----- -----</p>
<p><u>〈신 설〉</u></p>	<p>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 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p>
<p>제34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4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 ----- ----- 영 제157조 ----- ----- -----</p>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48조(기장의무) ----- ----- 담배 ----- ----- -----</p>
<p><u>〈신 설〉</u></p>	<p>제48조의2(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p> <p>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 <p>④법 제2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48조의3(가산세) ①법 제233조의7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법 제233조의7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u>〈신 설〉</u>	<p>제60조의2(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 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p> <p>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시장에게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p>

현 행	개 정 안
	<p><u>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p> <p>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p>
<p>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10일전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비과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월 10일까지로 한다.</p> <p>1. ~ 6. (생략)</p>	<p>제63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 ----- ----- ----- ----- ----- 1. ~ 6. (현행과 같음)</p>